

# 김포시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06호
----------	--------

제출년월일 2021. 7. .  
제 출 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 올해 33번째 수상자를 배출한 김포시문화상과 관련, 오랜 기간 시상이 이루어지면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수상후보자 발굴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됨에 따라, 행정여건 변화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김포시문화상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기존 6개 부문별 1명씩 시상하던 것을 단일 부문 1명으로 조정 (안 제2조)
- 나. 지역 기관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문화상 수상후보자로 추천가능하도록 자격요건 완화 (안 제2조)
- 다. 일반시민(10명 연서)도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추천권한 확대 (안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6. 10. ~ 6. 30.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분석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나) 경 기 도 : 문화중무과

## 김포시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문화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김포시 문화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김포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상 대상 및 자격)** ① 김포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 수상 인원은 1명으로 하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문화상 수상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문화상을 수상한 사람은 제외한다.

1.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고일 기준으로 시의 각급 기관·단체·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활동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문화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는 시·국·소장 및 부서장, 읍·면·동장, 시 소재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시민 1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4조(문화상 선정)**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7조의 김포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5조(시상 시기)** 문화상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상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시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부

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김포시 문화상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김포시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문화상 수상자 선정된 날까지로 하며 동시에 자동으로 위 축 해제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상 업무를 담당하 는 부서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문화예술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문화예술과장 한 기 정
	팀 장 직위·성명	문화팀장 차 진 복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권 충 안(☎2364)

## 김포시문화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김포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부문과 인원)** ① 문화상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학술부문 1명
2. 향토문화부문 1명(개정 2015. 12. 29)
3. 예술부문 1명(신설 2015. 12. 29)
4. 체육부문 1명(3호에서 이동 2015. 12. 29)
5. 사회·봉사부문 1명(4호에서 이동 2015. 12. 29)
6. 효행·장한가정부문 1명(5호에서 이동 2015. 12. 29)

② 수상대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시상시기)** 문화상은 년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김포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 따로 정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김포시 국장·소장·담당관·과장 등 부서장 또는 읍·면·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3. 12. 30, 2008. 3. 26)

**제5조 (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3년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김포시인 자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로 한다.(개정 2008. 3. 26)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포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수상자 선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시장이 예비심사하여 3배수이내의 인원을 제6조에 정한 김포시문화상심사위원회에 부의하고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문화상을 받은 자는 동일 부문에 대해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시상)** 시상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부상을 수상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변상)**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